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관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대표성 강화 및
회의록 공개〉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3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가. 위원 구성의 대표성에 관한 사항	2
나.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6.
3. 회부연월일 : 2025. 12.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Ⅲ. 검토의견

가. 위원 구성의 대표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④ ----- ----- ----- ----- ----- ----- 이 경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2025년 6월말 기준 575개 위원회(행정위원회 40개, 자문위원회 535개)에 선임된 위원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은 평균 40.1%, 비수도권은 평균 41.9%이고,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15조¹⁾

에 따라 청년 위촉 의무가 있는 위원회 중 총 118개 위원회에서 239명의 청년위원을 위촉함.²⁾

하지만 위원회별로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³⁾에 따라 특정 성별 초과 제한 기준(60%)을 맞추지 못하거나⁴⁾ 비수도권 위원이 감소⁵⁾하는 등 관련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지역·연령·분야 등 사회계층별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행되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1)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025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행정안전부, p.16~18.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4) “탄독위 위촉직 성별 불평등...”여성·청년 의사결정 참여 보장해야”, ESG 경제, 2025.7.15., “‘또 양성평등법 위반’...4·3실무위원 16명 중 여성은 단 1명”, 제주투데이, 2023.7.4.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기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비수도권 위원 비중은 2024.12. 43.1%에서 2025.12. 41.6%로 1년간 1.5%p 감소함.

나.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그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되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⁶⁾ 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⁷⁾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개가 원칙임.⁸⁾ 한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일반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음.⁹⁾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 제13조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¹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¹¹⁾ 제15조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¹²⁾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신청과 관계없이 위원회의 정보 등을 사전적·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취지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안건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도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하고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대국민 책임감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취지임.

다만,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기능 및 특성에 부합하게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을 시 해당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 제13조제4항 단서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함.

이와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¹³⁾,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¹⁴⁾, 「국민연금법」¹⁵⁾ 등은 회의

13)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공개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5)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참고로, 공공기관의 사전적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 결과 및 회의록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⁶⁾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과 연계하여 심사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33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365호, 2024.11.7.